

의안번호	제 849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1년 10월 1일

#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849
----------	-----

제출연월일 : 2021년 10월 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장애인복지법」 제48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위탁사무 :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
- 위 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1-1 밀레니엄타운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간
- 수탁기관 : 도내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사업비 : 250백만원(도비 100%) \* 1차년도 물품구입비(100백만원) 포함
- 위탁사무
  - 회관 운영·관리(인력포함), 시설사용허가 및 대부료 징수
  - 입주단체 관리 및 시설관리 등

※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별첨)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50,000천원(도비 100%) \* 연도별 변동 가능

인건비 및 운영비(150,000천원)	물품구입비(100,000천원)
<p>□ 인건비 : 57,12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관리) 28,560천원×1명 = 28,560천원</li> <li>- (청사관리) 28,560천원×1명 = 28,560천원</li> </ul> <p>□ 운영비 : 92,88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요금 및 제세) = 1,700천원</li> <li>- (수도광열비) = 30,000천원</li> <li>- (소모품비) = 9,300천원</li> <li>- (지급수수료) = 23,880천원</li> <li>- (시설 부대비용) = 28,000천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자사무실 = 10,500천원</li> <li>□ 로비/휴게실 = 7,048천원</li> <li>□ 다목적실(3) = 39,816천원</li> <li>□ 소회의실 = 7,343천원</li> <li>□ 대회의실 = 35,293천원</li> </ul>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붙임
-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서 : 해당없음
-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 관계법령 붙임

### 3. 참고사항 :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시설현황

- 위 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1-1 밀레니엄타운
- 규 모 : 연면적 2,991㎡(지하 1층, 지상 4층)
- 주요시설 : 22개 시설
  - 대회의실(1), 소회의실(1), 다목적실(3), 사무실(15), 기계실(1), 설비실 (1)
- 준공예정 : 2021.12.

###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준공예정 '21. 12.) 신축에 따라 도내 장애인의 복지와 장애인단체 지원 등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장애인회관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I.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II. 시설현황

- 시설명 :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신축)
- 위치 : 청주밀레니엄타운(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1-1)
- 규모 : 연면적 2,991㎡(906평) / 지하1층, 지상4층
- 주요시설 : 22개 시설
  - 대회의실 1, 소회의실 1, 다목적실 3, 사무실 15, 기계실 1, 설비실 1
- 준공예정 : '21.12.

## III. 위탁개요

- 위탁범위 :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전반
- 위탁기간 : 위·수탁협약일부터 5년(예정 : '22. 1. ~ '26. 12.)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사업비 : 250백만원(도비 100%) \* 1차년도 물품구입비(100백만원) 포함
- 위탁사무
  - 회관 운영, 관리(인력포함), 시설사용허가 및 대부료 징수
  - 입주단체 관리 및 시설관리 등

### Ⅲ. 추진일정

① 의회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 의회 동의</li> <li>※ 충청북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회기 중</li> </ul>	'21.10.
② 공개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기관 선정</li> <li>- (방법) 공개모집(공고일로부터 7일)</li> <li>- (자격)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li> </ul>	'21.10.
③ 수탁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li> <li>- (구성) 6~9명 정도</li> <li>- (심사) 공신력, 사업계획, 사업수행능력 등</li> <li>- (선정) 심사기준표 의함(고득점자 선정)</li> </ul>	'21.10.
④ 협약공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체결 및 공증</li> </ul>	'21.11.
⑤ 사무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수탁 사무개시</li> </ul>	'22.1.~

### Ⅳ. 세부 추진계획

#### ① 수탁기관 공개모집 신청·접수

- 접수시기 : '21.10.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 (공고) 도 홈페이지
- 접수방법 : 도 담당부서 사업계획서 직접 제출
- 신청자격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가 설립한 공사
  -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도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②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개최시기 : '21.10.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위원구성 : 9명 이내(관계 공무원 및 장애인복지관련 교수 등)  
※ 당연직 3(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 기타(교수) 위촉
- 심사항목 : 사업계획 적정성,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  
※ 신청기관 사업계획 설명(15분 내외)
- 심사기준 : 최저·최고 점수 제외, 70점 이상 고득점 기관 선정

## ③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협약내용
  - 법령·조례·지침 등을 준수하고 협약내용 성실히 수행
  - 위탁운영 권리 양도 불가, 시설물 구조와 용도 임의변경 금지 등
- 공증시기 : '21.11.

## V.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도의회) : '21.10.
- 수탁기관 공모 : '21.10.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1.10.
- 협약 체결 및 공증 : '21.11.
- 수탁기관 사무편람 승인 : '21.12.
- 위·수탁사무 개시 : '22. 1. ~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자 함

### □ 추진근거

-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4조의2

### □ 민간위탁 현황

- 위탁사무 :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관리
- 위탁기관 :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가 설립한 공사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시설규모 : 연면적 2,991m<sup>2</sup>(906평) / 지하1층, 지상4층
- 위탁기간 : 2022. 1. 1. ~ 2026. 12. 31. (5년)
- 위탁금액 : 매년 예산편성액 이내 ※ '22년 기준 250백만원
- 사업내용 :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 및 시설관리

### <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주요기능 >

1. 충청북도 장애인 사무실, 회의실 등 편의시설 운영
2.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의 거점 및 허브기능 수행
3. 장애인복지 분야의 집약체로서의 기능 수행
4. 장애인 단체간 네트워크, 협력사업 등 교류협력체계 구축

##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의견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비고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은 충청북도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20년 우리 도가 건립한 시설</li> <li>○ 장애인업무 관련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법인)에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li> </ul>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북도 장애인 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기능을 위해 장애인업무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법인)에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li> </ul>	
③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한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관리 운영할 예정이며, 시설 이용료 등을 통해 행정 비용을 절감할 계획</li> </ul>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 분야의 전문지식, 인력,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도내 장애인 및 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li> </ul>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사업계획에 기반 하여 목표 대비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사업성과 측정</li> </ul>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으며, 위·수탁 체결을 통해 운영방식 및 사업계획 관리를 통해 투명성 제고</li> </ul> <p style="margin-left: 20px;">*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지휘·감독)</p>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을 통해 장애인회관의 운영 기능 확대 예상</li> </ul>	

## □ 검토결과 : 적정

-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은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복지시설로
  - 도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단체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건립된 시설임
- ⇒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은 도내 장애인의 복지와 장애인단체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지어진 시설로 장애인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로 시설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민간 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제출·심의 : '21.10.
- 장애인회관 운영 수탁기관 모집공고 : '21.10.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결과 공고 : '21.10.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21.11.
- 위·수탁사무 개시 : '22 1.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 ① 도지사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가 설립한 공사
  2.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도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5. 그밖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무

####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 ① 도지사는 제4조 제1항의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북도 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액이 연간 5천만원 이하면서 일회성 행사적 성격의 사무
  2.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 관련성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③ 신청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